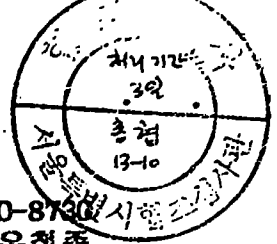


# 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 02 )750-8716-7/ 전송 750-8790  
 처리부서:주택개발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 별관2층)담당:유철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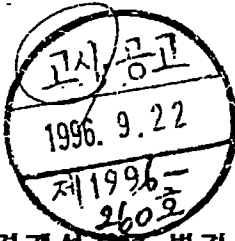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주계 58533 - 2219

시행일자 1996. 9. 23.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: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 법무담당관심사필
주택개발과장	전결	
개발 2 계장		
기안	유철종	
		협조

제목 : 창신2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

1.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- 440호('96.1.8)로 지구지정된 우리시 종로구 창신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구변경(일부추가)하고,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지구지정 변경 내역.

지구명	위 치	면 적 ( m <sup>2</sup> )		비 고
		당 초	변 경	
창신2 주거환경개선지구	종로구 창신동 600번지 일대	5,208.2	5,377.2	· 지구추가 (증 169m <sup>2</sup> )

붙임 : 1. 고시문 1부.

2. 지구변경 도면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제 의뢰

1. 아래와 같이 관보게제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창신2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

다. 법적근거 :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

원본에러

시행령 제3조제2항,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, 동법시행령 제12조

.붙임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: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: 주택관리과장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 보고

1.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- 440호('96.1.8)로 지구지정된 우리시 종로구 창신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하고,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.

.붙임 : 1.고시문 1부.

2.지구변경 도면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4 안)

수신 : 종로구청장

참조 : 주택과장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 통보

1.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- 440호('96.1.8)로 지구지정된 우리시 종로구 창신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 하고,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구청·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·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.붙임 : 1.고시문 1부.

2.지구변경 도면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

(제 5 안)

수신 : 받는곳참조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 통보

1.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- 440호('95.1.8)로 지구지정된 우리시 종로구 창신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 하고,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하였기 통보합니다.

.붙임 : 1. 고시문 1부.

2. 지구변경 도면 1부. 끝.

## 주택개량과장

.받는곳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.

# 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 - 260 호

##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

고시번호	1916917	제 260 호	
담당자	민재삼	사제정	김우남
장	서	관	관

1.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- 440호('95.1.8)로 지구지정된 우리시 종로구 창신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 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 주택개발과와 종로구청 주택과·도시정비과 및 해당 등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 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6년 9월 일

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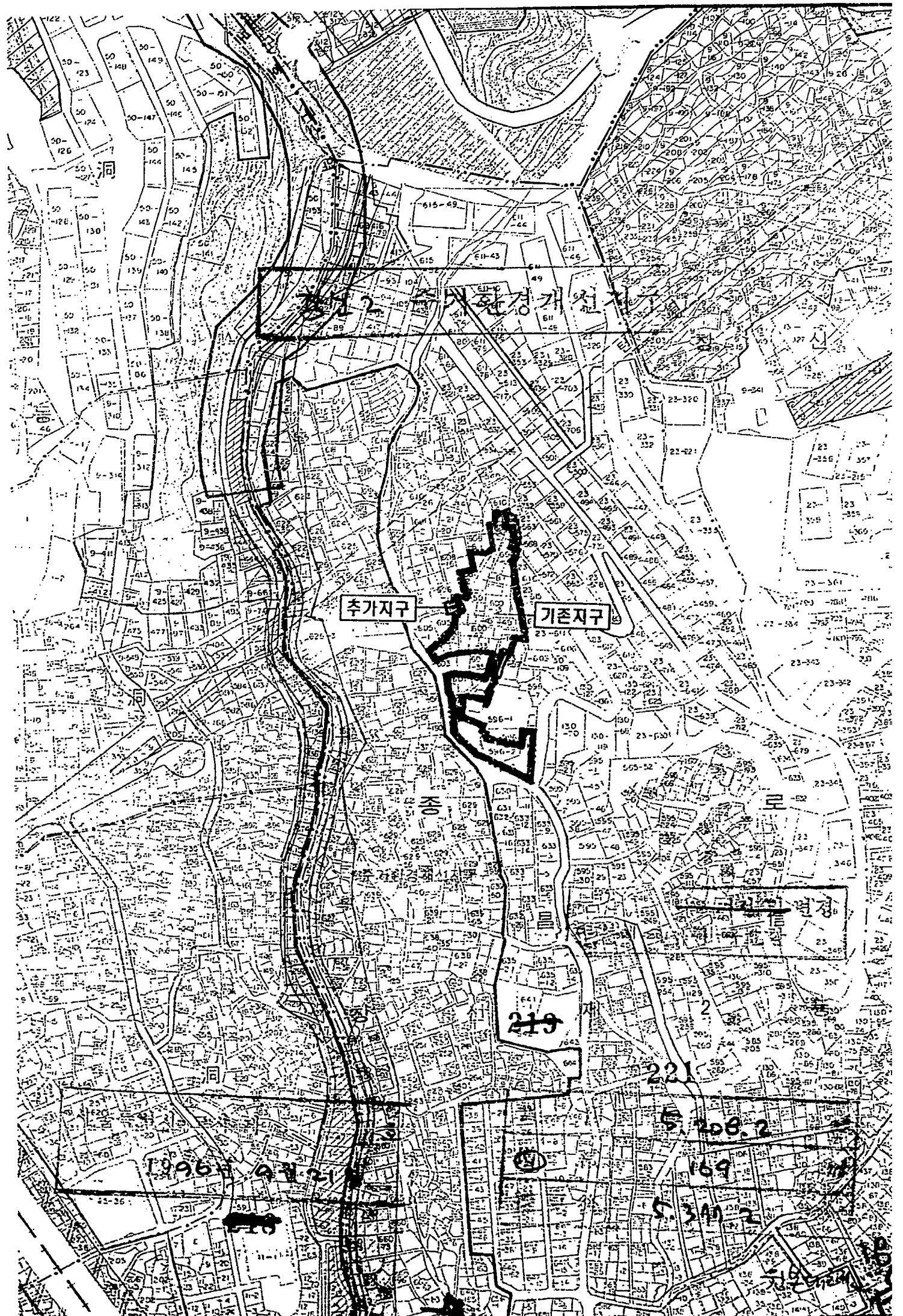
○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조서

지구명	위 치	면 적 ( m <sup>2</sup> )		비 고
		당 초	변 경	
창신2 주 거환경개 선지구	종로구 창신동 600번지 일대	5,208.2	5,377.2	· 지구추가 (증 169m <sup>2</sup> )

5.보대? 186

# 공 적 요 약 서

소 속		주민등록번호	수공기간	공 적 내 용
직 위	성명(한자)			
행정6급	이 홍 범 (李 弘 範)	520303 - 1804912	19년8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개발 임대주택매입 부족지원대책 수립</li> <li>• 2000년까지 4만가구 매입비 부족 9,098억원의 대책 수립</li> <li>○ 재개발사업 관련 민원처리 - 28 건</li> <li>○ 시장운영 3개년 계획 수립</li> </ul>



추가지구

기존지구

환경개선지구

환경

9963

219

221

5, 208.2

169

5, 300.2